[서식 예]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(예금 및 보험금채권)

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

채 권 자 ㅇㅇ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1. ◈◆은행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조합장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●●은행 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●●●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금액 별지 1과 같습니다. 압류및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2와 같습니다.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2 표시의 채권을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들은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3.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4.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소송을 제기하여 ◎◎◎◎법원 ◎◎지원 20○○ 드단○○ 호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.
- 2. 그러나 채무자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,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2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	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	1통
1.	송달증명원	1통
1.	법인등기사항증명서	2통
1.	송달료납부서	1통
1.	채권표시목록	5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

청 구 금 액

합계: 원

- 1. ○○○○법원 ○○지원 ○○○○트단○○○○호 ○○○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 원
- 3. 집행비용 원(인지 원, 송달료 원)



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

합계: 원

채무자가 제3채무자

1. ㅇㅇㅇㅇ에 금 원정

2. ○○○이에 금 원정

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·보험금 채권 가운데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 될 다음 예금 및 보험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.

- 다 음 -

- 1. 압류,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·보험금과 압류, 가압류된 예금·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.
- 1) 압류.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·보험금 2) 압류. 가압류된 예금·보험금 2.여러 종류의 예금·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.
- <예금> 1) 보통예금 2) 당좌예금 3) 정기예금 4) 정기적금 5) 별단예금
 - 6) 저축예금 7) MMF 8) MMDA 9) 적립식펀드예금 10) 신탁예금
 - 11) 채권형예금 12)청약예금 13) 기타
- <보험금> 1) 변액보험 2) 저축보험 3) 기업보험 4) 연금보험 5) 건강보험 6) 종신보험 7) 생명상해보험 8) 보장보험 9) 어린이보험 10) 다이렉트보험 11) 공제, 방카슈량스 등 기타보험
- 3. 같은 종류의 예금·보험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· 보험금부터 압류한다. 단 채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로서 제3채무자 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강제보험채권은 제외한다.
- 4. 채무자가 보험계약에 기하여 의무를 다하던 중 보험기간 만료 전 보험약관에 규정된 사유로 또는 보험계약만료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(만기)보험금 지급청구채권
- 6. 중도해지로 인하여 채무자가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청구채권.
- 7. 단,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,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보험금을 제외한다. 끝.

				CV 및 대한법률구조구단	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 제1항	3조, 제22항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	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, 제229조제6항)				
및 기간 ㆍ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	15조제2항)		
ul Ó	·인지액: 집행권원별로 4,000원 (압류 2,000원 + 추심 2,000원)			2,000원)	
비 용 	용 ·송달료 : 당사자수(채권자, 채무자, 제3채무자)×1회 우편료×2회분			×2회분	
기 타	·추심명령은 압류명령 할 수도 있음.	신청과 동시에	할 수도 있고,	사후에 신청	

	·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
	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,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
	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(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23888 판결).
	·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,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
	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
	는 것이므로,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
	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,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
	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
	하지 않음(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73490 판결).
	·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
	우열이 없고,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
	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
	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
	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
	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,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
참고판례요지	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
	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
	(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43819 판결).
	·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
	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
	료한 경우,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
	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
	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
	것이니,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
	있음(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7다34594 판결).
	·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
	이므로,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
	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
	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
	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(대법원1997. 8.
	26. 선고 97다4401 판결).

-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,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,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,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,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음(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10867 판결).

참고판례요지

- ·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 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 니한 것이며,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 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,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,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 이며,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 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 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, 이러 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(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54300 판결).
- ·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,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72589 판결).
- ※ 제출법원(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)
 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 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 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